

제296회 정례회  
2010.12.24 (금)

# 심사보고서

-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2010. 12. 24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**1. 심사경과**

가. 발의자 : 윤성옥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15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**2. 제안설명 요지**

(제안설명자 :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과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를

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 등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### 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###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충청북도조례 제 호**

## **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에 임산물,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(이하 “위탁신청서”라 한다)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“연구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에 의뢰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시험 및 감정위탁 등) ① 연구소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는 이 조례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"연구소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시험 및 감정위탁 등) ①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에 임산물·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 이하 "위탁자"라 한다는 별지 제 호서식(이하 "위탁신청서"라 한다)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"연구소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수탁의 거부) ①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서의 검토결과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시험성적서) ① 연구소장은 임업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성적서 교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뢰인 이외의 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수탁의 거부)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시험성적서)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공시종자의 봉함) ① (생략)</p> <p>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공시종자의 봉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 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.</p>

## [별지 제1호서식]

임업에 관한 신 청 인 (법인은 대표자성명)	· 실내 · 현지	· 시험	위탁신청서	처 리 기 간	
		· 분석		시험	100일
		· 조사		분석	25일
	· 감정	조사		15일	
		감정		30일	
		①성명 ③주소		②주민등록번호	
위탁내용	④공시품명 또는 ⑤조사사항 ⑥수량 또는 ⑦조사면적 ⑧생산지(제조지) ⑨또는 조사지역 ⑩채취연월일 ⑪위탁사항 ⑫목적				
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					
신청인			(서명 또는 날인·무인)		
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비서류 : 임야도(1:6,000) 1부(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)</li> <li>○ 공시품 :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</li> </ul>					수수료  산림청고시 참조

[별지 제2호서식]

발급번호 제 호		임업에 관한 · 시험 · 분석 · 조사 · 감정 성적서			
신청인	① 성명		② 주민등록 번호		
	③ 주소				
결과내용	④ 공시 품명 또는 조사사항				
	⑤ 수량 또는 조사면적				
	⑥ 생산지(제조지) 또는 조사지역				
	⑦ 채취연월일				
	⑧ 내용				
	⑨ 방법				
	⑩ 성적				
	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( )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				
	년 월 일				
	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				

## [별지 제3호서식]

임업에 관한 · 시험      · 분석 · 조사      · 감정				성적서 교부신청서		처리기간
						즉시
신청인	① 성명			② 주민등록번호		
	③ 주소					
내용	④ 공시품명 또는 조사사항					
	⑤ 성적발급번호					
	⑥ 사용목적					
	⑦ 소요량	국문	통	영문	통	
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( )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·무인)						
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						
구비서류: 의뢰인의 동의서 1부(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)						수수료
						산림청고시 참조

## 관 계 법령 발췌

### ·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